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	소유자명		비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지분 면적	성명	소유자주소	
146	문광면 광덕리	1086-0	답	997	997	997	국(국가보훈처)	-	
147	문광면 광덕리	1096-0	도	4,941	1,456	1,456	국(국가보훈처)	-	
148	문광면 광덕리	1097-0	구	2,884	919	919	국(국가보훈처)	-	
149	문광면 광덕리	1098-0	구	7,823	3,467	3,467	국(국가보훈처)	-	
150	문광면 광덕리	1102-0	도	201	201	201	국(국가보훈처)	-	
151	문광면 광덕리	1103-0	구	85	85	85	국(국가보훈처)	-	
152	문광면 광덕리	산83-1	임	712,881	712,881	712,881	국(국가보훈처)	-	
153	문광면 광덕리	산83-26	임	694	694	694	국(국가보훈처)	-	
154	문광면 광덕리	산83-29	구	1,554	1,554	1,554	국(국가보훈처)	-	
155	문광면 광덕리	산83-30	구	1,223	1,223	1,223	국(국가보훈처)	-	
156	문광면 광덕리	산84-0	임	1,983	1,983	1,983	국(국가보훈처)	-	
157	문광면 광덕리	산85-0	임	5,554	5,554	5,554	국(국가보훈처)	-	

## 2. 물건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물 건		소유자명		비고
				종류 / 규격	수량(주)	성명	소유자주소	
1	문광면 광덕리	927	전	농막 / 목재	12m <sup>2</sup>	국(국가보훈처)	-	
2	문광면 광덕리	943	답	소나무 / 12년	350	국(국가보훈처)	-	
3	문광면 광덕리	952	전	소나무 / 12년	300	국(국가보훈처)	-	
				밤나무 / 20년	4	국(국가보훈처)	-	

## 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8-677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제한대상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
2. 제한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간('18.12.1 ~ '20.11.30, 기간연장)
3. 시행일 : 2018. 12. 1.
4. 제한방법 :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·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

## ●산림청고시제2018-98호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[별표 3] '기준별기령, 벌채·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'에 따라 「친환경벌채 운영요령」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20일

산 림 청 장

친환경벌채 운영요령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 3 '기준별기령, 벌채·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'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친환경벌채”란 산림의 생태·경관적 기능 등이 유지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
- ② “군상”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
- ③ “수림대”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
- ④ “산림영향권”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, 야생 동·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·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

제3조(적용기준)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·경관유지·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
2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(2) (나) 중 ①, 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. 다만, 사유림에서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긴 경우 제6조에 따른 산림영향권을 산출 한 것으로 함.
3. 불량림·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·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

제4조(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)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,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.

- ②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,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. 다만,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)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구역 면적의 10%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‘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’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.

-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,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.
-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·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·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산림영향권 산출방법) ①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%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.

- ②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 공간으로 한다.

제7조(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)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,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.

-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·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.
- ④ ‘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’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벌채작업 및 사후관리)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.

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·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.

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,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.

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·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(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)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.

제9조(벌채의 지도 및 감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탁·대행자에 대해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검토 기한) 산림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벌채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수림대 및 군상 산림 영향권 분석(예시)

○ (조건)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미터, 벌채 구역 면적 9.68ha, 군상폭 60미터



① 벌채구역 = a+b+c+d+e

② 벌채면적 = b+d+e (\* “수림대a 및 “군상c”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)

③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

가. (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b +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d) ÷ 벌채면적 × 100% ≥ 50%

\* 벌채면적 = 수림대,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

나. 산림영향권 면적은 벌채면적의 50% 이상, 군상 또는 수림대 면적은 벌채구역 면적의 10% 이상

※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(단위 m<sup>2</sup>)

○ 산림영향권 비율(%) : 산림영향권 면적 ÷ 벌채면적 × 100%

○ 벌채면적 = 벌채구역에서 수림대 및 군상을 제외한 면적  
= 96,800 - [16,800(수림대) + 11,304 (2,826×군상 4개소)] = 68,696

○ 산림영향권 면적 : 35,296

-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=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
= (7,850 - 2,826 = 5,024) × 4개소 = 20,096

-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=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
= (360 × 20) + (20 × 200) × 2개 = 15,2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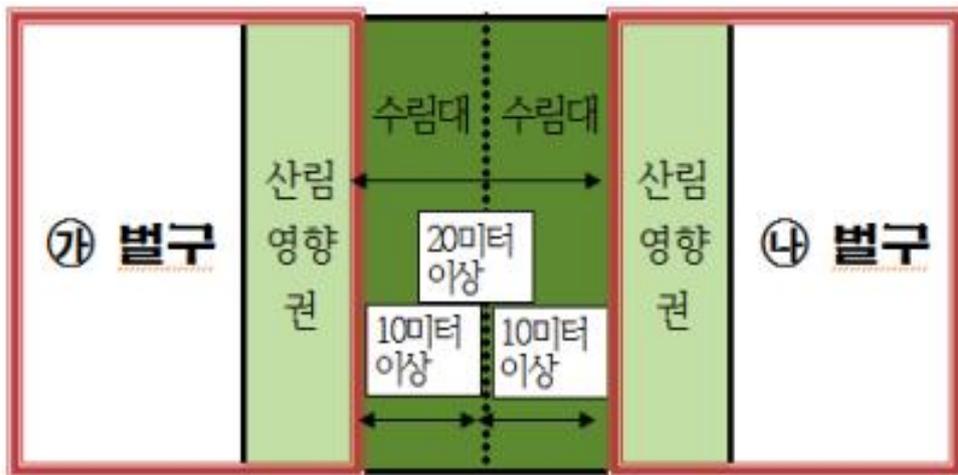
○ 산림영향권 비율(%) : 35,296 ÷ 68,696 × 100% = 51.3%

\* 산림영향권 충족

[별표 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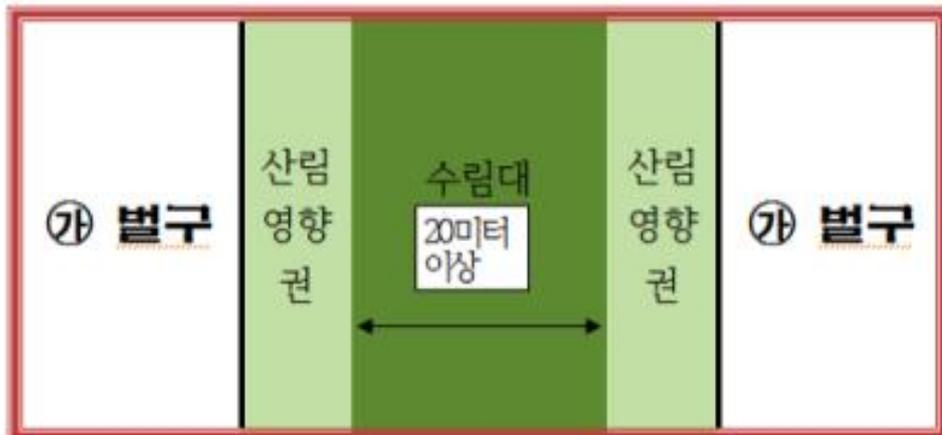
수림대 존치 및 산림 영향권 인정(예시)

○ (사례1: 2개 벌구) 벌구와 다른 벌구 사이 수림대 존치



※ 벌구 경계를 기준으로 벌구별로 10미터 이상 밖으로 수림대 존치 및 산림영향권 인정

○ (사례2: 1개 벌구) 1개 벌구내 중앙에 수림대 존치



※ ㉠벌구 중앙에 수림대를 존치할 경우 존치구역 좌우 모든 구역 산림영향권 인정

○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 수림대 설치 제외 가능

[별표 3]

## 친환경별채 대상지 사전 점검(예시)

점검 목록	점검 방법	검토의견
1.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역·지구 지정 현황	○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·지구 지정현황 파악	
2. 개별법에 따른 별채관련 검토	○ 개별법에 의한 별채가능 여부 확인 - 각 개별법에서 정한 별채기준 검토(의견조회) - 채종립 및 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포함 여부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자연도 I 등급지역 포함 여부 등	
3. 별채예정지가 도로 등 가시권 포함 여부	○ 지형도 및 현지 확인 토대로 가시권 파악 - 고속국도 및 철도 가시지역 : 1,000m 이내 - 일반국도 가시지역 : 500m 이내 - 학교 : 250m 이내 - 공장·가옥 또는 종교시설 : 150m 이내	
4. 마을도로, 사유토지 등 반출로 확보	○ 반출로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 - 지적도상 나타나지 않는 현황도로일 경우 마을이장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	
5. 식수원 존재 여부 등 수질 오염 여부	○ 식수원 위치 및 이용규모 등 파악 - 식수원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도에 표시 - 식수원의 이용현황(주민) 파악 - 별채예정지와 거리 파악 - 별채로 인한 토사유입 가능여부 파악 - 토사유입 시 복구대책 마련 등	
6. 사업대상지 주변 시설물 확인 - 농장, 축사, 펜션 등	○ 농장 등의 위치 확인 및 현황 파악 - 농장, 축사, 펜션 등 확인 및 지형도 표시 - 별채 시 소음 등으로 피해 가능여부 파악 -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등	
7. 토사유출,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여부	○ 별채예정지의 재해발생 가능성 파악 - 급경사 마사토 등으로 토사유출 가능여부 검토 - 운재로가 계곡부를 관통하거나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-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예방 대책마련 등	
8. 부산물 채취여부 - 송이, 잣, 산나물, 수액 등	○ 지역주민들이 별채예정지 산림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- 마을 이장 면담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취 규모 등 이용현황 확인	
9. 별채예정지내 산림문화자산 존재여부	○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 문화자산 및 지정기준에 준하는 문화자산 존재 여부 -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 이장과의 면담 등	
10. 기타 그 밖의 사항	○ 별채 및 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도 파악	